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1호 2014. 4. 23.(수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4-5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—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31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4-5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23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4-1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4년 1월 20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마을어장 진입로를 개설하여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43-16번지선 공유수면
5. 공사완료내역
 - 마을어장진입로(718.5㎡)
6. 공사기간
 - 2014년 3월 1일 ~ 2014년 4월 30일
7. 점용·사용 승인(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)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: 2014. 4. 22.